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9	. / (총 1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전 화 ⁻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신 현 두		044-202-1890
보상지원팀	담 당 자	홍 주 형		044-202-188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중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병상 추가 확보 △병원 내 병상 순환 △타 병원 전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현재는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특별한 재난상황**인 만큼, 각종 **지원·수혜 대상 확대**에 있어 과거의 관행에 따르기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낼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일부 소규모 교회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체부·과기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의 적극홍보와 추가지원 방안 강구를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9월 8일 (화) 14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주요 밀집 지역*의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 * 여의도(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피크닉장 1,2)
 - 한강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과 카페(7개소)는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며, 모든 주차장(43개소)도 21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오늘(9.9.수) 부터 무증상·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1개소(59실, 118명)를 추가로 운영한다.











- 또한, 9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총 8,97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요 방역수칙 실천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 카페리, 선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 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항만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뿐 아니라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항만업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 총 14종, 166개소의 방역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다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인 시설은 지속적인 수칙 안내와 점검으로 **대부분 방역지침을 숙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다수 밀집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방역을 강화하였다.
 - 먼저, 야영장의 경우 단체방문 자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강화, 공용시설 이용시간 최소화 등을 추가한 방역지침을 배포(8.28.)하였다.
 - 소극장(280개소), 실내체육시설(1,750개소), 영화상영관(172개소) 등 일부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카페·음식점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밀집하는 시간에 방역 지킴이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수도권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수도 병원의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음압 병상 8개를 중환자 병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오늘(9.9.수)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음압 병상 40개를 격리병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환자 치료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군의관,** 간호 인력을 투입하여 확진자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2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금 '간이지급절차'도입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하여 9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
 -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총 6종
 -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되었다.
- □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형훈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며
 -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39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60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하고 있다.
- □ 9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7,926개소, ▲ 실내체육시설 5,992개소 등 37개 분야 총 5만 7433개소를 점검 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2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홍시설 1만 241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37반, 1,084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일반영업장 대상'간이지급절차'안내
 - 2.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일반지급절차 산정방법)
 - 3. 고정비용 및 영업이익 산출방법(예시)
 -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일반영업장 대상 '간이지급절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현존해주신	귀	기과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u>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지급절차</u>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지급절차: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증빙자료(6종)*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
 -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제수당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퇴직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소분 비용
복리후생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선전 등 지출비용
세금과공과	조세, 부과금 등	보험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료

②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폐쇄·업무정지·소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 청구인은 (1)지자체(시군구)에 폐쇄·소독명령 사실유무 확인 후 (2)전년도 영업이익 등 확인하여 보상금 예측해 손실보상 청구방법을(일반 또는 간이지급) 선택합니다.
- 1. 예상 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2. 일반지급절차를 선택한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에도 **일반지급절차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됨
 - ※ 일반지급절차로 산정 시 세금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실제 영업이익과 다를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절차 비교표 >

구 분	일반지급절차	간이지급절차
심사절차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매출액 증빙서류[10종] 제출 및 심사→ 심의→ 지급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지급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매출액/고정비 등 영업손실근거서류(6종)	1. 손실보상 청구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 (0원 ~)	정액 100,000원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은 별도지급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일반지급절차 산정방법)

- 1.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1일당 영업손실액 [(영업이익 + 고정비용) ÷ 365*] × 소독기간
 - * '19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 반영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X (1 + 0.41% ['20년 1~6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
 -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영업손익
 - (고정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보험료 8종의 합계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고정비용
- 2. 손실보상금은 소독기간이 짧고,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소액으로 산출됩니다.

구분	고정비용 + 영업이익	소독시간	예상 손실보상금
예시1	'19년 기준 10,000,000원	0.5 / 1/ 2	13,690 / 27,390 / 54,790
예시2	'19년 기준 30,000,000원	0.5 / 1/ 2	41,100 / 82,200 / 164,400
예시3	'19년 기준 40,000,000원	0.5 / 1/ 2	54,790 / 109,580 / 219,170

3.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있는 경우 : 고정비용, 영업이익 확인 가능



- ②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으로 '매출액' 확인
- ▼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

산출 방법

③-1 고정비용 산출방법

- · (고정비용 항목) 급여, 임차료 등 8종
-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③-2 영업이익 산출방법

- · (영업이익) = 총 매출액 총비용(고정비용 + 변동비용) [변동비용 : 고정비(8종) 제외항목]
-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4. 문의처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60~3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881/1882











붙임3 고정비용 및 영업이익 산출방법(예시)

※ 신청인이 고정비, 영업이익 입증이 불가하고, <u>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한</u>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업종(일반소매업) ◆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 소독·폐쇄기간: 0.5일 ◆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 :13,780,000원 (100,000,000원× 13.78%) ※ 일반 소매업 구성비합계 : 13.78% ◆ 1일당 손실액 : 37,900원 (13,780,000원×100.41% ÷ 365일) ◆ 손실보상액 : 18,950원(37,900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 업종(기타종합소매업) ◆ 19년 매출액: 80,000,000원 ◆ 소독·폐쇄기간: 1일 ◆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180일	◆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II,072,000원 (80,000,000원 × I3.84%) ※ 기타 종합소매업 구성비 합계: I3.84% ◆ I일당 손실액: 6I,760원 (II,072,000원×I00.41% ÷ I80일) ◆ 손실보상액: 6I,760원(6I,760원 × I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음식업) ◆19년 매출액: 30,000,000원 ◆소독·폐쇄기간: 0.5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8,748,000원 (30,000,000원 × 29.16%) ※ 음식업 구성비 합계: 29.16% ◆ 1일당 손실액: 24,065원 (8,748,000원×100.41% ÷ 365일) ◆ 손실보상액: 12,032원(24,065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 업종(교육서비스업) ◆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 소독·폐쇄기간: 1일 ◆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53,030,000원 (100,000,000원 × 53.03%) ※ 교육 서비스업(중소기업) 구성비 합계: 53.03% ◆ 1일당 손실액: 145,880원 (53,030,000원×100.41% ÷ 365일) ◆ 손실보상액: 145,880원(145,880원 × 1일)	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 ☞ 전년도 매출액이 적거나, 소독시간이 짧은 경우, 고정비와 영업 이익 구성비가 낮을수록 보상금은 적게 산출됩니다.
 - ♪ 간이지급절차 유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리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 이 시	민간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판매흥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피크, 종교사설 실내 결혼장 광건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 방DM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기능 ** ** ** ** ** ** ** ** ** ** ** ** **		
기관, 기업	28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실 제한	
기 <u>다,</u> 기급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